

의안  
번호

1073

【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 
**검 토 보 고 서**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4. 6. 30.(월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7. 2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4. 7. 21.(월)

### 2. 제정이유

가.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실있는 제작 도모

- 기획취재 강화, 미담사례 발굴, 외부전문가 기고문 게재 등 내실화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구정 실현 도모

나.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

-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분기별 1종 1회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제작 규정을 준수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를 위한 기준 구체화

### 3. 주요내용

- 발행횟수 변경 : 월 1회 → 분기별 1회 (안 제3조)

4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### 5. 검토의견

-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분기별 1종 1회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제작 규정을 준수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유지의무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발행횟수를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함.